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6월 1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년 6월 3일

나. 제 안 자: 윤유선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6. 1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윤유선 의원)

□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
나. 인권, 구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라.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를 규정함.(안 제4조~제5조)

마.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바. 인권교육,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7조～제8조)

사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9조～제18조)

아.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인권위원회법

나. 협조부서 : 감사담당관

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 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제정 취지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인권, 구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를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-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인권교육,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규정(안 제9조～제18조)
-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9조)

다. 종합 의견

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」은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

○ 안 제12조 2호와 3호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,

○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안 제12조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3호를 삭제

나. 수정내용

안 제12조제3호를 삭제함

※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3.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	제12조(위원의 해촉) 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(삭 제)